

부천시 금형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1월 17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1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12. 12) 상정
- 제1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12. 12)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김 창 열)

가. 제안이유

- 우리시에 집중화 되어 있는 산업 중 다른 산업이나 업종이 상호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고 잠재성 있는 산업을 선정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정하고, 이를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장은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시장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에 대한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지역특화산업 육성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 재산을 특화관련 연구기관·단체·조합·법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단체의 임원, 기업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각 3인, 시의원 2인 및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 위원회는 지역특화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안 제8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시장은 위원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형·조명·로봇 및 부품소재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20인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함.(안 제15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없음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8호
의결 년월일	2006.12.21 (제132회)

제출년월일 : 2006. 11. 13.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우리시에 집중화 되어 있는 산업 중 다른 산업이나 업종이 상호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고 잠재성 있는 산업을 선정하여 지역특화 산업으로 정하고, 이를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시장은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에 대한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 재산을 특화관련 연구기관·단체·조합·법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단체의 임원, 기업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각 3인, 시의원 2인 및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바. 위원회는 지역특화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안 제8조)

사.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아. 시장은 위원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형·조명·로봇 및 부품소재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20인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함.
(안 제15조)

□ 첨부

-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형·조명·로봇 및 부품소재산업 등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우리시를 국내·외 지역특화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관산업”이라 함은 금형·조명·로봇 및 부품소재 산업 등 제작에 관련 있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조합·기업체 유치 및 운영
2. 시험검사·설계지원·장비활용 등을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3. 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 시험검사·설계·측정설비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기술자 및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5. 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업체·대학·연구소 및 공동기술개발 사업
6. 지역특화산업의 단지조성 사업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물의 설치) 시장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산업관련 연구기관·조합의 청사 및 공용의 검사실·시험실·측정실
2. 기술자 및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장
3. 보관창고 및 전시실, 세미나실 등의 부대시설
4. 기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시설물의 운영) ①시장은 제4조에 규정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 재산을 특화관련 연구기관·단체·조합·법인에게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지역특화산업을 시의 중점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3조의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의 임원
2. 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각 3인
4. 시의회 의원 2인
5. 시 소속 공무원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특화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제15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금형·조명·로봇 및 부품소재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3조의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의 육성에 관련된 사항
2. 특화산업의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육성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서 제 47조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부를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2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도의 추진체계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종합 지원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자의 기업의욕고취에 관한 사항

③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현행조례>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

제정 2001. 04. 02 조례 제18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집중화되어 있는 금형 및 연관산업(이하 "금형산업"이라 한다)을 부천시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부천시를 국내·외 금형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금형산업육성정책자문기구로 부천시금형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형"이라 함은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을 말한다
2. "연관산업"이라 함은 금형제작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반 산업활동을 말한다
3. "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금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조합·기업체 유치 및 운영
2. 시험검사·설계지원·장비활용 등을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3. 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 시험검사·설계·측정설비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금형 기술자 및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5. 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업체·대학·연구소·부천시(이하 "산·학·연·관"이라 한다) 공동 기술개발 사업

6. 금형 및 금형관련 산업의 단지조성 사업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물의 설치) 시장은 금형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금형관련 연구기관·조합의 청사 및 공용의 검사실·시험실·측정실
2. 기술자 및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장
3. 보관창고 및 전시실, 세미나실 등의 부대시설
4. 기타 금형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협의된 시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시장은 금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천시 공유재산(이하 "시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금형관련 연구기관·단체·조합·법인(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유재산대부신청서 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관련기관이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의 운영) ①시장은 제4조에 규정된 시설물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금형산업을 부천시의 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시장은 금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협의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금형산업 육성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금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기관·조합·기업체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험검사·설계지원·장비활용 등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 시험검사·설계·측정설비 활용에 관한 사항
5. 금형 기술자 및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장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학·연·관 공동기술개발 지원과 수출주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금형 및 금형관련 산업의 단지조성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8. 금형부품의 신뢰성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4인이내로 하며 시의원 2인, 부천상공회의소사무국장 및 시의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위촉직위원은 21인이내로 하며 금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업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와 변호사·회계사·변리사·세무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장 등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협의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처리와 금형산업 발전방향 설정 등의 의제를 발굴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임무를 지닌다.

제14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기타 협의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개진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5. 기타 위촉원인이 소멸된 경우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01. 4. 2 조례 제1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